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3 | 2026.3.16 (2026.3.9~2026.3.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원 중심으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인재가 모이는 선순환 모델 창출을 목표로 산업, 인재, 창업, 캠퍼스 등 전 영역에 걸쳐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대규모 전략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역할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수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기능과 역할의 중복 없이 전략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지원과 위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조정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 박수영의원 등 20인)**」 ,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 ·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의원 등 15인)**」 ,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 · 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재경위>, <과방위>, <국방위>, <농해수위>, <정개특위>, <기후위기특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3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13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4
- 과징금부와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6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17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17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1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 박수영의원 등 20인)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1

•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2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25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2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6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의원 등 15인)	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	2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2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 등 관련 법령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유라시아] 러시아 화장품 및 미용의료 시장 진출 관련 주요 규제 환경과 대응 방향
- [방송통신(TMT)]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 [금융] 최근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언
- [조세] Tax Intelligence 창간호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3) EU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발표 - 과기원 중심 지역 협력체계 구축해 기업·인재 모이는 선순환 모델 창출 - 산업, 인재, 창업, 캠퍼스 등 전 영역에 걸쳐 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2026-03-11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이하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음

1. 추진 배경

AI 기술이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재편 중임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AX 정책·투자 등 전방위 총력전 중임.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역량 결집과 함께,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가치창출 방식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 수준의 AX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내 주요 산업·대학 등과의 상호 연계성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을 중심으로 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2. 과기원 - 지역 AX 혁신 방향

기본방향은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유입·정착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임. 권역별 세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 중부권은 KAIST를 중심축으로, 국내 최고 R&D 집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출연연·ADD 등 우수 연구기관과 함께 국방·반도체·바이오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
- ▲ 호남권은 GIST가 중심축이 되어, KENTECH·전남대 등 지역 주요대학 초광역 협력모델과 국내 최초 AX 실증밸리를 기반으로 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전격 이식
- ▲ 대경권의 중심축은 DGIST로, 권역 내 탄탄한 대규모 산업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로봇·반도체·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분야의 고신뢰 AX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할 예정
- ▲ 동남권에서는 UNIST를 중심축으로 하여, 국가 전략자산인 조선해양·우주항공·소재 산업을 AX와 융합해 지능형 자율설계·생산체계로 구축하고 제조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본격화

3. 비전 및 전략

이번 전략은 “과기원 중심 AX 융합·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며, 4대 과기원 중심 지역 산·학·연 협력모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토대로 4대 중점 과제(①산업, ②인재, ③창업, ④캠퍼스)를 추진함

4. 중점 추진과제

① 산업 AX 혁신 : AX로 첨단 지역산업 경쟁력 고도화

‘산업 AX 혁신’ 과제의 핵심은 산·학 AX 공동연구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우수한 AI 인재 및 AI 모델 개발역량을 가진 과기원이 원팀(one-team)이 되어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개방형 연구 협력모델을 도입. 동 연구소는 과기원과 기업이 공동투자하고, 과기원 내에 기업·과기원 연구자가 함께 상주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역 산업 전반의 AX 달성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대학 및 타기업까지 점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AX 인재양성 : 지역 협업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AX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지역 AI 영재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 충북 AI 영재학교 신설하고, 지역 수요 기반 공모 등을 통해 기존 학교의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3개교 내외)을 추진.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과기원 AI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AI 핵심인재 확보에 주력. 과기원 AI 단과대학은 AI 핵심기술부터 지역산업 AX, 미래전략 등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제로, '26년 KAIST에서 선도모델을 완성하고 '27년부터 3개 과기원 및 지역대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또한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학점교류, 교원겸직, 공동대학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 AI 인재양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AX 교육을 확대

③ AI 창업거점 : 지역 AI 융합 딥테크 창업 활성화

‘AI 창업거점’ 과제는 지역 내 대학·기업의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진출까지 연결되는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과기원별 창업원을 신설·확대하여 지역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화를 통해 지역 특화분야 중심 딥테크 창업 및 AX 실증 스피노프(spin-off)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 아울러 AI 에이전트 기반 창업·교육 지원을 확대해 AI 1인 창업가(AI Solopreneur)를 육성하는 한편, 카카오 등 민간 AI 전문가·인프라 협력 강화 및 과기원 창업펀드 조성 등을 토대로 지역 내 유망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

④ AI 캠퍼스 조성 : 연구·학사·행정 전면에 AI 도입

‘AI 캠퍼스 조성’의 출발점은 지역 혁신기관과의 인프라·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 과기원 보유 GPU를 중앙 집적화하는 한편, 지역 내 대규모 민간·공공 데이터센터 연계 강화, GPU 정보공유·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연구 프로세스 AX 혁신 측면에서는 AI, 로봇 기술이 접목된 자율실험실 구축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확보·관리를 위한 4대 과기원 통합 연구데이터 선도모델 구축을 추진. 또한 학사·행정·학술정보·정보보안 등 캠퍼스 전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할 계획

5.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과 함께 전임교원·학생 정원 확대, AI 인프라 및 첨단시설·장비 확충 등 4대 과기원의 혁신 기반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한편, 중점 추진과제 착수는 주요 협력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제재 강화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2026-03-10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힘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음. 또한,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여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또한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매칭되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힘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1 시행 예정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1 시행 예정
-----	-----------------------------------	------------------

방위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09-11 시행 예정
-----------	--	------------------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全)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7-03-11 시행 예정
---------	---	------------------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10 시행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를 추가하고 그 기준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3-17 시행 예정

벤처·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및 계약기간 등 설정·설립 요건, 그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법인 및 조합 등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요건 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1 시행 예정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여 피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6-09-11 시행 예정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09. ~2026.04.20.

상위법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25.12.2.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 (전화: 044-203-4546, 팩스: 044-203-4743)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3.11. ~2026.04.20.
-------	---------------------------------	-----------------------------

국·영문 상표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에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으로써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에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지정기간 연장 시에서 법정기간 연장 시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이의신청 서류와 관련된 불명확한 설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전화: 042-481-3935, 팩스: 042-472--346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3. ~2026.04.22.
----------	----------------------------------	-----------------------------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점검할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적합인정서 발급 및 적합성인정 취소·시정명령 등 관련 지방청장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58, 팩스: 043-719-375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3.11.
~2026.04.20.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446, 팩스: 044-200-446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6.03.10.
~2026.0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 (안 IV. 1. 및 별표)

-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을 및 금액(정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 10%(정액 20억원),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소 15%(정액 30억원)의 부과기준율(금액)이 적용되도록 하한을 대폭 상향
-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 → 100%로 대폭 상향하면서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
-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함

②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 (안 IV. 2.)

-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시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늘리고, 1회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

③ 감경 규정 정비 (안 IV. 3.)

-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④ 협조감경 후 진술 등 반복시 감경 취소 근거 신설 (안 IV. 6.)

- 조사·심의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반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tel:044-200-4171) (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2026-03-09 발의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 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026-03-12 발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일반주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자회사 상장, 주요 경영사항 결정 과정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정보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점 역시 시장의 신속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133조의2 신설 및 제145조, 제445조 등)

정무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2026-03-13 발의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제23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2026-03-09 발의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2026-03-09 발의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 보증 · 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대규모 수출계약에서 구매자금융이나 절충교역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 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수입자 측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주요국들 또한 이러한 정책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대규모 수출 확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 재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수출금융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대규모 · 장기 · 고위험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략적 수출 기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구매자금융이나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 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주로 부담하는 반면, 수출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개별 수출기업에 집중되어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전략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역할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수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기능과 역할의 중복 없이 전략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지원과 위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6-03-10 발의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끈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의3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17)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1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박수영의원 등 20인)

2026-03-12 발의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26-03-12 발의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 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6-03-13 발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75조의4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026-03-13 발의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 정책이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통관제도·관세평가·품목분류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26-03-12 발의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 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1조 및 제31조의6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6-03-10 발의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026-03-10 발의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2026-03-11 발의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6-03-10 발의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2026-03-09 발의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을 영화 향유권의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 등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영화제작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2026-03-11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2026-03-09 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평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2026-03-11 발의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03-12 발의
---------------------	---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026-03-09 발의
---------	-------------------------	---------------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의 제조·수입한 제조업자·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품의 제조·수입한 제조업자·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품의 제조·수입한 제조업자·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품 제조·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1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	2026-03-09 발의
------------------	----------------------------	---------------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3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6-03-10 발의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6-03-12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설희의원 등 11인)

2026-03-13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서,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 19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2026-03-12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2026-03-12 발의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호출 성공률·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청원소위	3/16(월) 10:00	- 청원 심사
재경위	조세소위	3/16(월) 10:00	- 법안 심사
	경제재정소위	3/17(화) 09: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3/17(화) 14: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등, 법안 심사 및 의결
과방위	정보통신소위	3/17(화) 11: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소위	3/17(화) 14:00	-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3/17(화) 15:00	-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법안 등 상정, 업무보고(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농해수위	해양수산소위	3/19(목) 10:00	- 법안 심사
정개특위	전체회의	3/19(목) 10:00	- 법안 상정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	3/19(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16(월) 10:00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재관·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3/16(월) 12:00	WMC 2026 'The IQ Era'가 온다 Debrief AI G3 도약 국회 브라운백 미팅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3/16(월) 14:00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기화 전략과 제도 설계	서왕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3/17(화) 09:30	원전감독법 이행경과 진단을 통한 개선 국회토론회	허성무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3/17(화) 14:00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	박정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3/17(화) 14:00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강명구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3/18(수) 10:00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3/18(수) 10:00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박상혁·김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3/18(수) 15:00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3/19(목) 10:00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김태선·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3/19(목) 14:00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 방안 간담회	진종오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3/20(금) 11:00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정유업체 4사 공 개 간담회	정진욱·권향엽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3/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4호(통권 제292호) 발간	국회도서관	
	3/18(수)	「Data+」 제2026-4호(통권 제28호) 발간		
	3/18(수)	「금주의 서평」 제2026-10호(통권 제769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9(월)	「Data+」 제2026-3호(통권 제27호)	국회도서관	
	3/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9호(통권 제768호)		
	3/11(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3호(통권 제27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9(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 등 관련 법령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10(화)	유라시아	러시아 화장품 및 미용의료 시장 진출 관련 주요 규제 환경과 대응 방향
3/10(화)	방송통신(TMT)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3/10(화)	금융	최근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언
3/13(금)	조세	Tax Intelligence 창간호
3/13(금)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3) EU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3/13(금)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